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2016년 3월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서식인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기존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안 제5조제3항제1호)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4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을 기존 서식과 함께 행정자치부예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출산 “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생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서식으로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등 경감서비스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유축기 무료 대여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수혜누락을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임.
-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인구감소 위기를 대응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을 이용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중 하나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아울러 원활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9 호
----------	---------

제출연월일 : 2016.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16.3.31일부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한 기존의 신청서식과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규정」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

2. 주요내용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한 기존의 신청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규정」 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련예규 :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4.7.~2016.4.27.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신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p>	<p>제5조(지원신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u>또는 별지 제4호 서식</u>) 2. -----</p>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 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서울시 영등포구)	<input type="checkbox"/> 출산 장려금	<input type="checkbox"/> 둘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셋째 자녀(이름 :)) <input type="checkbox"/> 넷째 자녀 이상(이름 :))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행복카드(신분확인용) 발급 (2자녀 이상) (카드 수령지 주소 :))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 1588-9955)	
	<input type="checkbox"/> 유축기 무료 대여 (대여기간 1달)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영등포구보건소(02-2670-4765)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일반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가정양육)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급여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 신청시 압류방지 통장제외)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input type="checkbox"/> 출생사실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
---	--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p>1.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p> <p>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p> <p>*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p>	<p>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p> <p>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p> <p>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p>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내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센터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동의 서식 참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물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